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환경관리 Q&A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¹

건축물석면조사 조사대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일 경우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르면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소유자: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Q²

배출시설의 가스배출시기에 따른 방지시설 가동시간 조정 여부?

에틸렌옥사이드저장시설의 방지시설로 흡수예의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장시설에 에틸렌옥사이드가 저장되어 있는 24시간 내내 방지시설을 가동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장시설에서 에틸렌옥사이드가 배출될 때에만 가동해도 되는지요? 평상시에는 저장시설의 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질소가스를 충전하고 있으므로 가스배출 우려가 없으며, 다만 저장시설에 에틸렌옥사이드를 충전할 때 저장시설의 압

이 상승하므로 수동으로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배출하려고 합니다. 수동밸브를 열었을 때만 방지시설을 가동해도 되는지 아니면 저장시설에 에틸렌옥사이드가 저장되어 있는 24시간 내내 방지시설을 가동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방지시설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에틸렌옥사이드 저장시설에서 평상시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수동밸브를 열때만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기간 동안만 방지시설을 가동하여도 될 것입니다.

Q³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선별, 압축, 감용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 군지역에서는 사업장규모가 2,000㎡ 이상인 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장 규모가 2,000㎡ 미만인 시, 군지역의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여도 되는 것이지요?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군지역(광역시외의 군지역 포함)으

Q&A



로 사업장 규모가 2,000㎡미만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활용에 이용되는 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⁴

사진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방류할 수 있는지요?

엑스레이 현상폐수가 년 20리터 정도 발생되어 위탁처리 하고 있는데, 폐수처리장으로 버려도 모든 항목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발생예상 오염 물질을 수질신고필증에 기재하고, 사진폐수를 배출공정으로 등재한 다음 자체 운영중인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자체처리 하여도 문제사항은 없는지요? 아니면 사진폐수는 반드시 위탁처리 해야 하는지요?

A

폐수배출시설에서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이며,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자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법상 사진폐수를 반드시 위탁처리 해야하는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신고 또는 허가 기관)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⁵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시 체크사항은?

시중에 나와있는 애너하임디스포저〔환경부 등록번호(2013-47호)〕, 싱크퓨어〔환경부 등록번호(2012-3호)〕라는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환경부 허가로 되어 있어 합법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제품 중 한가지를 구입하여 사용할 예정인데 환경부 허가가 확실한 것인지 그리고, 설치 및 사용시 환경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여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A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환경부 고시 제2013-179호, ‘13.12.30)’에 따라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분쇄하여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13.7.1이후 출시되는 제품은 전기안전 인증을 받아야만 일반가정에서만 판매·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 이후 인증당시의 상태(20% 미만 배출)를 유지하지 못하고 전량 또는 20% 이상을 하수도로 배출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면 구조를 변경한 불법제품으로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